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 주 군 수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용지의 환수,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변경(안 제6조)

나. 원칙적으로 처분(양도) 및 임대(대여)를 제한한 산업용지를 처분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도록 변경(안 제22조제1항)

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환수규정을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로 한정(안 제23조)

라.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을 지자체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8. 3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용지의 환수,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6조 사업비 결정 및 부담에서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입주자에서 사업시행자로 규정 하고 있으며
-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양도) 및 임대(대여)를 제한한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23조에서는 광범위한 산업용지 환수규정을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일체의 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 주 군 수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계획에 의거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역 내 공장 신·증설 기업 등으로 투자기업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15조)
나. 지역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확대(안 제23조의2)
다.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정 (안 제23조의3)
라.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26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등 관광사업 시설의 투자비 지원(안 제26조의2)
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안 제3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8. 3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등 보조금지원 대상을 지역내 공장 신·증설 기업 등으로 투자기업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2는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명시 및 지원근거 마련을, 안 제23조3은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기업 지원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26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6조2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음식, 휴양 등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30조의2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 제22조, 제23조, 제23조2에 의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불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